

세무회계저널
제14권 제3호 2013년 6월 pp.123~157
한국세무학회

미국 Schedule M-3을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최기호* · 이정미**

— <요 약> —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는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조세회피를 수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BTD가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엔론 사태를 교훈삼아 2004년부터 새로운 신고양식인 Schedule M-3(이하 “M-3 양식”)를 도입하고 기업의 BTD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M-3는 무려 100개 이르는 항목으로 BTD 항목을 표준화하여 세분화한 새로운 양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결산확정주의에 따라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BTD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조세회피와 BTD가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욱이 이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BTD를 보다 표준화된 형태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우리나라에서 BTD를 보여줄 수 있는 신고서식으로 미국의 M-3 양식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고서식이다. 개선방향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BTD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BTD를 구분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시하고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작성예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법과 회계기준과의 차이가 크거나 조세회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BTD 항목의 세분화를 시도해본 것이다.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비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BTD에 대해서 이제는 실무계나 과세당국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BTD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조세회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cgh@uos.ac.kr, 02-6490-5037,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jeongmilee@msn.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4일

1차수정일 2013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5일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새로운 세무보고 양식으로 M-3을 제안한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별지 제15호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개선필요성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의 양식으로는 법인납세자의 재무보고목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보고목적의 과세소득 간 차이(BTD)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BTD에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결과가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ills(1998)는 BTD가 큰 기업일수록 세무조사를 받기가 쉽고 세무조사로 인한 수정금액이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Wilson(2009)은 절세수단(tax sheltering) 거래를 이용한 기업일수록 BTD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BTD는 기본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치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Desai and Dharmapala(2006)는 BTD를 총발생액으로 회귀시켜 비정상BTD를 구하고 이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이용하였으며 Frank et al.(2009)은 BTD 중 영구적 차이(PERDIFF)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이들 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BTD 및 이를 수정한 측정치들이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대응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BTD 외에 조세회피측정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효세율 개념도 달리 보자면 BTD의 변형된 측정치에 불과하다(Hanlon and Heitzman, 201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BTD는 조세회피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상 세무보고목적의 과세소득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BTD는 오직 세무보고에서만 관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BTD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법인세법 별지 제15호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이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추가로 더해지거나(익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 차감되는(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항목과 금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득처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완하기 위한 부속서식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개별 세무조정내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BTD내역을 납세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내역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 간 혹은 시기별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양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국의 M-3 양식을 비교하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M-3 양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BTD를 모두 100개에 달하는 세부내역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¹⁾ 이러한 M-3양식은 2004

1) 이 중 28개 항목은 기업의 기초자료와 보고실체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72개 항목이 사실상

년부터 총자산규모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에게 의무화된 것인데 그 이전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사한 M-1양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납세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복잡한 M-3 양식을 의무화한 배경에는 엔론 사태가 있다.

엔론 사태가 가져다준 교훈 중 하나는 엔론이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서도 세무보고상으로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엔론은 수많은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동시에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해 왔으며 이 결과로 엔론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극단적으로 벌어졌다(Outslay and McGill, 2002 ; Desai,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진 BTD에 대해서 아무도 주의를 갖지 않았으며 이를 교훈 삼아서 학계와 실무계가 동시에 BTD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기존 양식인 M-1을 대체할 새로운 양식으로 M-3를 개발하게 되었다(Boynton and Mills, 2004).

엔론 사태와 같이 BT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겪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T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BTD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분리정도가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엔론처럼 회계이익을 부풀리면서 동시에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²⁾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 세무상 과세소득이 작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정운오 등, 2006)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앞선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의 크기와 BTD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심충진 등, 2006).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한계세율과 같은 조세회피동기들과 BTD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서(고종권, 2003 ; 최기호 2004) 간접적으로 BTD가 조세회피를 보여주는 주요한 측정치라는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³⁾ 더욱이 IFRS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BTD를 보여준다.

- 2) 실제로 국가별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일치도를 조사한 Atwood et al.(201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4번째로 일치도가 높았으며 미국은 30번째였다.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34개국의 일치도를 조사한 구자은(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9번째로 일치도가 높았지만 미국은 34번째로 가장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국가별 일치도를 높고 낮음의 더미로 조사했던 Young and Guenther (2003)에서도 우리나라는 일치도가 높으며 미국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3) 미국의 경우에는 Mills(1998), Wilson(2009)와 같이 조세회피와 BTD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실증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조세회피와 BTD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실증증거들이 제시된 바는 없다. 그러나 한계세율과 같은 조세회피동기들이 BTD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들 외에도 BTD를 직접적으로 조세회피측정치로 사용하거나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측정치와 같이 BTD를 일부 변형한 측정치 혹은 유효세율과 같이 BTD를 비율변수로 변형한 측정치들을 이용한 논문들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BTD와의 관련성은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고 볼

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 정도는 필연적으로 낮아져서 BTD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BTD의 체계적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서식 중 BTD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II장에서는 BTD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을 찾아서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증거가 BTD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개선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III장에서는 미국에서 M-3 양식을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M-3 양식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직접적인 참고가 되는 것은 미국의 M-3 양식이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왜 M-3양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개선하였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볼 것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BTD를 유형화하여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실제 기업사례를 이용한 작성예를 보여줄 것이다. 제V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BTD와 조세회피

1. BTD의 원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소득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측정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동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BTD = f(GAP, GAP \times Incentive)$$

GAP :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불일치 정도

Incentive :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경영자의 동기

수 있다(고윤성, 2007. 참조).

- 4) 심태섭 등(2011)은 IFRS가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갖는 본질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의 첫 번째 단계는 결산확정주의에서 강제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식은 LTD의 일차적 원인은 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회계기준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기업의 현재 조세부담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주로 기업의 미래에 관심을 갖지만 법인세법은 기업의 과거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면에서의 차이는 많은 세부기준들에서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회계기준은 발생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공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 추정 등을 용인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추정에 따른 비용이나 수익의 계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위 식을 보면 LTD의 이차적인 원인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동기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영자가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자 할수록 그리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할수록 LTD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동기가 LTD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불일치 정도와 상호작용한다. 즉,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동기로 인하여 LTD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계기준이나 세법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회계기준과 세법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면 경영자의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동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LTD는 생길 수 없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낮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나 이익조정동기가 LTD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다.

2. LTD와 조세회피

LTD에 조세회피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서로 다른지를 보는 것이다. 조세회피의 정의 자체는 모호하며 분명하지 않지만(Hanlon and Heitzman, 2010) 가장 극단적인 조세회피는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 등을 납부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ills(1998)는 이런 관점에서 우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을 세무조사 후 수정된 과세소득과 LTD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Mills(1998)는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세무보고 자료에서의 세전 순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과 이에 대한 과세소득 간 차이, 그리고 이연법인세 등으로 보았다. 3가지 경우 모두에서 LTD 변수는 세무조정금액에 대해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결국,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세무조사에서 조정금액이 크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유인이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Mills(1998)와 유사하게 Chan et al.(2010)도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수정금액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았는데 Mills(1998)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세회피 정의를 채택한 것이다. 즉, 기업들은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에서는 미국에서 각종 절세수단(tax shelter)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을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⁶⁾

Wilson(2009)은 절세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59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Graham and Tucker(2006)가 수집한 절세수단이용기업⁷⁾과 함께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절세수단이용기업을 추출하여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업과 산업분류코드 첫 두 자리가 일치하고 회계연도가 동일하며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비교대상인 통제기업으로 선정하였다. Wilson(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절세수단이용기업과 통제기업 간의 BTD는 절세수단이용행위가 있었던 해의 3년 전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절세수단이용기업에서 BTD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절세행위가 있었던 연도에서 가장 커진다. 그러나 절세한 금액을 조정한 후의 BTD는 오히려 통제기업이 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Lisowsky(2010)는 Wilson(2009)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표본 수를 9,223개 기업-연도로 크게 확대하였고 Wilson이 투입했던 설명변수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투입하여 모형을 확대하였다. 연구 결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절세수단 이용기업과 통제기업을 구분하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선 Wilson(2009)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심충진 등(2006)은 세무조사를 받은 우리나라 기업표본을 이용하여 BTD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단변량 분석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간 BTD는 차이를 보였다. 즉,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BTD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의 크기는 BTD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BTD가 조세회피 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5) 미국의회에서는 절세수단이용을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U.S. Congres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1999), Bankman(2003)은 세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절세수단 이용기업은 사실상 조세회피기업과 동의어이다.

6)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절세수단(tax shelter)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nkman(1999)은 미국기업들이 연간 10억불이 넘는 세금을 각종 절세수단을 이용하여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Graham and Tucker(2006)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절세수단이용기업을 추출하였는데 하나는 상장기업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검색하여 절세수단이용과 관련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추출하였고 다른 하나의 경로는 대중매체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절세수단 이용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기업들이다. 이렇게 수집된 절세수단이용기업은 모두 44개 기업이다.

높아서 경영자의 조세회피 동기가 LTD에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종권(2003), 최기호(2004) 등의 연구들은 한계세율이나 이월결손금 여부 등으로 간접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동기를 측정하였을 때 이러한 측정치들이 LTD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심충진 등(2006)의 연구를 우리나라 기업의 현상을 대표하는 연구결과로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I. 미국의 M-3 양식

1. 엔론의 회계부정과 조세회피

엔론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 회계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엔론의 회계부정 이면에는 조세회피가 숨어 있었다. 엔론은 수많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회계이익을 부풀리는 한편 과세소득을 감소시켜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탁우선주(Trust Preferred Stock or Monthly Income Preferred)인데 이는 회계상으로는 자본이어서 이자비용을 보고하지 않으면서도 세무상으로 부채로 취급되어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엔론이 1993년부터 발행한 이 증권의 규모는 8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거래들을 통해서 엔론은 조세부담을 회피하여 왔는데 그 결과로 엔론의 LTD는 기형적으로 커져갔다. Outslay and McGill (2002)은 파산 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직전 3년간 17.5%, 8.2%, 15.2%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미국의 법정법인세율 35%와 비교한다면 엔론의 조세부담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 1996-2000, 엔론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단위 : 백만달러)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연결납세신고자료에서의 당기순이익	연결납세신고자료에서의 과세소득
1996	584	1,433	(310)
1997	105	961	(504)
1998	703	1,612	(753)
1999	893	3,112	(1,458)
2000	979	5,896	3,101

자료원 : Desai(2005) p.179

위의 <표 1>에서는 엔론의 회계상 당기순이익, 세무보고 자료에서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과세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이익들이 서로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인데 세무상 결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기도 한다. 둘째, 세무보고 자료의 당기순이익과 실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이(세무상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많은 자회사들이 있음을 반영하는)를 보면 이들 두 숫자를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세무상 결손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들 세무자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기업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엔론의 사례를 보면 LTD가 경영자가가 이익을 왜곡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M-3 양식 개발과정

2004년 1월 28일 미국의 재무부와 IRS는 합동으로 기존의 세무보고 양식 M-1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무보고 양식인 M-3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M-3 양식은 총자산 규모가 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조정하는 양식이다. 새롭게 개발한 M-3 양식은 지난 40여 년간 사용되어왔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 양식인 M-1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Boynton and Mills, 2004).

우선 기존의 M-1 양식에서는 비교의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미국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가 연결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에서는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M-1 양식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비교하면서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연결납세 대상인 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인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Boynton et al., 2004). 또한 내부거래에 의한 배당금 수수료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Boynton et al., 2004). 이런 상황에서 IRS는 M-1 양식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IRS가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앞서 살펴본 엔론이다. 2002년 7월, Wall Street Journal에서 Allan Murray는 상장기업들의 과세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며칠 후 상원재무위원회의 상원의원인 Grasseley는 SEC와 재무부에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였다. Canellos and Kleinbard(2002)는 즉각적으로 M-1 양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학계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 Mills and Plesko(2003)는 현재 M-1 양식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들의 지적에 대해 IRS는 즉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3년 6월 IRS와 재무부가 합동으로 기존의 M-1 양식을 개선하는

템을 구성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2004년 7월 새로운 M-3 양식이 개발되었다.

새로 개발된 M-3양식은 3쪽에 이르며 100개 항목을 포함한다. 각각 항목은 4칸으로 나뉘어져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그리고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를 각각 기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록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자산규모 천만 달러 이상의 법인납세자에게만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2004년 12월 31일 이후 신고부터 작성하도록 하였다.

규제당국에서는 이러한 M-3양식을 통해서 4가지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Everett et al. 2007). 첫째, 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둘째, IRS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세부항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납세순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만을 선별하여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M-3 양식이 납세이행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Mills and Plesko (2003)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납세자들은 이미 이와 유사한 정보들을 다른 양식을 통해서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며 또한 호주에서는 30여개 항목,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100여개 항목에 이르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납세이행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 구성항목

M-3 양식은 Corporation, Partnership 혹은 금융기업과 같이 조직형태나 업종별로 달리 작성된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Corporation이다. 따라서 Corporation에 대한 M-3 양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M-3 양식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Part I 은 재무와 세무 보고목적의 보고실체가 서로 다르기에 BTD의 출발점인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Part II는 Part I에서 조정된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수익 혹은 익금 측면에서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Part III는 비용 혹은 손금 측면에서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 Part I, 재무 정보 및 회계상 당기순이익(손실) 조정

우선 Part I 은 재무보고실체와 세무보고실체와의 차이로 인한 회계상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무보고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기준과 세무보고목적의 연결납세를 위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고실체를 전제로 하여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BTD는 서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 통일시키기 위한 항목들로 Part I 이 구성된다. Part I 의 앞선 3개 항목은 기업의 기본정보

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며 본격적인 조정은 4번째 항목부터 시작된다. 4번째 항목부터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미국의 경우, 재무보고목적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세무보고목적에서는 연결납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에서의 연결실체가 서로 달라진다. 즉,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지만 연결납세를 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지분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50~80%인 자회사들은 재무보고목적상 연결이 되면서도 세무보고목적의 연결납세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LTD의 출발점인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연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납세대상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으로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LTD는 이를 보고하는 기업마다 서로 크게 달라진다. 이는 이미 앞선 <표 1>의 엔론의 경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M-3이전의 과거 M-1양식에서는 이러한 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업마다 LTD의 출발점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M-3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Part I 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Schedule M-3 Part I

항목	내 용
4	재무보고목적의 연결재무제표 상의 실체들의 회계상 당기순이익
5	재무보고목적상 연결대상이나 세무보고목적에서는 제외되는 외국법인의 당기순손익 조정
6	재무보고목적상 연결대상이나 세무보고목적에서는 제외되는 내국법인의 당기순손익 조정
7	연결대상이었음에도 제외되었던 미국내 실체들(파트너십이나 유사한 실체들)의 당기순손익 조정
8	위에서 조정된 실체들과의 거래로 인한 당기순손익 조정
9	재무보고목적의 회계기간과 세무보고목적의 회계기간의 차이로 인한 손익 조정
10	연결실체 내부의 배당금 조정
11	세무보고목적의 실체들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손실)

나. Part II, 당기순이익(손실)과 과세소득 조정—수익 혹은 익금항목

Part II는 수익 혹은 익금에 대한 조정을 위한 항목들이다. Part II는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23번째 항목은 다시 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29번째 항목도 3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3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위 항목별로 모두 4칸으로 구분하고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을 (a), (d)칸에 기록하며 양자의 차이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각각 (b), (c)칸에 기록한다. 각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항목들을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항목들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3〉 Schedule M-3 Part II

항목	내 용
1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지분법 손익
2	이전에 과세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배당
3	Subpart F 소득 등 이와 유사한 소득
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5	이전에 이미 과세된 해외로부터의 배당
6	미국법인으로부터의 지분법 손익
7	연결납세에서 제외되지 않은 배당
8	연결납세에 포함된 법인의 소수주주 이익
9	미국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손익
10	해외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손익
11	기타 다른 도관실체로부터의 손익
12	규칙 §1.6011과 관련하여 보고대상 거래와 관련된 항목
13	이자수익
14	세법상 현금주의를 적용한 법인들의 발생주의 손익으로 전환
15	위험회피 거래
16	시가법 평가손익
17	매출원가
18	처분이익 대 리스수익
19	세무상 회계처리방법 변경으로 인한 손익조정
20	이연수익
21	장기계약으로 인한 수익
22	채권할인발행차금상각 및 기타의 이자수익 조정
23	각종 평가손실
24	자본손실공제한도 및 이월
25	기타 차이를 보이는 항목 합계
26	총계(1번부터 25번까지 합계)
27	총공제항목의 합계
28	차이가 없는 항목 합계
29	26번부터 28번까지 합계 혹은 다른 실체들의 조정항목합계
30	조정합계

첫째, 1~11번 항목은 법적으로 다른 실체들로부터 인식한 손익을 표시하기 위한 항목들이다.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자회사나 외국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손익조정이므로 이러한 항목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주의해야 할 거래로부터 생기는 손익항목들이다. 12번 항목은 재무성규칙 §1.6011에 따른 보고대상 거래(reportable transactions)로 인한 손익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이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거래들로 인한 손익이므로 구분 표시한다. 보고해야 할 거래란 모두 6개로서 (1)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열거한 거래(listed transaction) (2) 거래상대방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거래(confidential transaction) (3) 계약상 상황의존적인 조건이 따르는 거래(transaction with contractual protection) (4)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거래(loss transaction) (5) BTD를 중대하게 유발하는 거래 (6) 세액공제를 받고서도 보유기간이 짧은 자산거래 등이다. 또한 15번 위험회피거래는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에서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하는 손익을 표시한다.

셋째, 회계와 세무목적에서 수익유형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한 항목들이다. 이자수익(13번), 처분이익과 리스수익(18번), 채권할인발행차금상각 및 이자수익조정(22번), 자본손실공제 한도 및 이월금액(24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계상으로 동일한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상으로 소득유형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유형의 변경은 중요한 세무계획방법 중의 하나이다(Scholes et al., 2009). 이런 점에서 자본이득이나 이자수익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넷째,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에 있어서 수익의 인식방법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이다. 세무상 현금주의를 이용한 법인들의 경우 발생주의와의 차이를 별도로 표시하며(14번), 평가손익에 있어서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차이를 표시하는 항목(16, 17, 23번)과 장기계약수익(21번), 이연수익(20번)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항목들 외에 26번부터 30번까지는 합계를 표시하기 위한 항목들이다. 26번은 1~25번 항목들의 수익 혹은 익금의 합계이며 27번은 Part III의 공제항목합계를 그대로 옮겨 적은 항목이며 결과적으로 30번 항목은 익금 및 공제 항목 전체 조정합계로서 (a)칸은 앞선 Part I의 11번 항목과 일치해야 하며 (d)항목은 세무보고목적의 과세소득과 일치하게 된다.

〈표 4〉 Schedule M-3 Part III

항목	내 용
1	미국의 연방 당기법인세 비용
2	미국의 연방 이연법인세
3	미국내 주 당기법인세 비용
4	미국내 주 이연법인세
5	외국 당기법인세비용(원천세 제외)

〈표 4〉 Schedule M-3 Part III (계속)

항목	내 용
6	외국 이연법인세
7	해외 원천징수세
8	이자비용
9	스톡옵션 비용
10	기타의 지분에 기초한 보상금액
11	접대비
12	벌과금
13	소송 및 손해배상비용
14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보상비용(parachute payments)
15	임원에 대한 초과보수
16	연금 및 이익분배
17	기타 은퇴후 지급액
18	이연보상
19	현금 및 유형자산에 의한 기부
20	무형자산에 의한 기부
21	기부금 공제 한도 및 이월
22	국내제조활동 공제
23	당기 합병 및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은행 수수료
24	당기 합병 및 구조조정에 따른 법률비용
25	당기 합병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기타 비용
26	영업권 상각
27	구조조정, 합병 및 창업비 상각
28	기타의 상각 및 손상차손
29	환경복구비용
30	감모상각
31	감가상각
32	대손상각
33	기업소유 생명보험(COLI)의 이자수익
34	매입 대 리스비용
35	연구개발비
36	주주 외의 출자
37	기타 차이가 있는 비용/공제
38	총 비용/공제 합계

다. Part III, 당기순이익(손실)과 과세소득 조정-비용 혹은 공제항목

Part III는 비용 혹은 공제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Part II와 동일하게 각 항목별로 (a)회계상 비용 (b)일시적 차이 (c)영구적 차이 (d)과세소득의 4칸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표 4>에서 보여준다. 이러한 항목들을 구분하여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번항목은 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이다. 과세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인 반면에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후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9, 10, 14, 15, 16, 17, 18번 항목은 모두 임원이나 종업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다. 보상비용은 기업의 비용 중에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종업원과 기업 간의 계약에 따라 세무계획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⁸⁾

셋째, 일부 비용은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으로 제약이 크다. 이는 접대비(11번), 별과금(12번), 기부금(19, 20, 21번) 등으로서 이들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넷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영업권, 무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26, 27, 28, 30, 31번)와 대손상각(32번)을 별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다섯째, 세법상 여러 가지 공제가 허용되는 국내제조활동에 대한 공제(22번), 연구개발비(35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여섯째, 앞선 Part II에서의 유형구분과 마찬가지로 이자비용(8번)과 리스비용(34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구분 항목들 외에 마지막 38번은 총 비용/공제 합계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비용 혹은 공제 합계는 Part II의 27번 항목에 옮겨 적는다.

4. M-3 양식의 보고실태

2004년 M-3 양식이 도입된 이후, 미국 국세청은 세 번에 걸쳐 2004년, 2005년과 2007년의 M-3 양식보고실태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Boynton et al., 2006, 2008, 2011). 이들 논문에서 따르면 M-3 양식 보고기업의 LTD 통계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2004년과 2005년간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컸지만 2007년에는 오히려 과세소득이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oynton et al.(2011)은 불황으로 인하여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여 과세소득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2001년과 2002년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회계상 당

8) 이러한 관점에서 Scholes et al.(2009)에서는 보상을 이용한 세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작았던 이유와 유사하다.⁹⁾

〈표 5〉 Schedule M-3 보고기업의 LTD 통계

금액 : \$백만

	2004	2005	2007
신고기업 수	30,901	38,516	42,395
회계상 세후 순이익(Part I 4번) 합계	\$561,919	\$1,054,823	\$573,179
법인세비용 가산 합계	210,219	290,337	272,231
회계상 세전 순이익(Part I 11번) 합계	772,138	1,345,161	845,410
일시적 차이 합계	(92,482)	37,140	53,475
영구적 차이 합계	(53,929)	(52,580)	85,745
과세소득 합계	\$625,773	\$1,329,579	\$984,630

(자료원) Boynton et al.(2006, 2008, 2011)에서 발췌함.

아래의 <표 6>은 2007년 보고된 M-3 양식 중에서 Part II, Part III의 구성항목 중 여러 기준에 따라 비중이 큰 순서대로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Schedule M-3에 따른 LTD 구성항목¹⁰⁾

패널 A : 보고빈도가 높은 항목별 순위			
순위	항 목	보고 빈도수	비율 ^a
1	감가상각	37,903	0.89
2	접대비	36,079	0.85
3	이자수익	32,737	0.77
4	이자비용	31,266	0.74
5	각종 평가손실	26,085	0.62
6	현금 및 유형자산에 의한 기부	26,081	0.62
7	대손상각	25,664	0.61
8	매출원가	24,853	0.59
9	기타의 상각 및 손상차손	19,066	0.45
10	연금 및 이익분배	18,312	0.43

a. 전체 보고기업 수인 42,395개에 대한 비율

9) Hanlon and Shevlin(2005)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과세소득과 회계상 세전 순이익 간의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대체로 회계상 세전 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점차로 커지고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2001, 2002년에는 회계상 세전 순이익보다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대로 2003년에 다시 반전되어 오히려 회계상 세전 순이익이 과세소득을 가장 큰 폭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10) Boynton et al.(2006, 2008, 2011)에서 발췌함.

〈표 6〉 Schedule M-3에 따른 BTD 구성항목 (계속)

패널 B : 음의 총 BTD를 보인 항목 순위			
순위	항 목	BTd 합계	비율 ^a
1	스톡옵션 비용	(50,386)	0.362
2	과세된 해외로부터의 배당	(34,866)	0.250
3	이자수익	(24,741)	0.178
4	감가상각	(22,965)	0.165
5	보고해야 할 거래와 관련된 항목	(21,374)	0.154

a. 전체 보고기업들이 보고한 세전 당기순이익 \$845,410백만에 대한 비율

패널 C : 양의 총 BTD를 보인 항목 순위			
순위	항 목	BTd 합계	비율 ^a
1	Subpart F 소득 등 유사한 소득	62,601	0.450
2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48,201	0.346
3	영업권 상각	46,547	0.334
4	과세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배당	32,021	0.230
5	대손상각	30,240	0.217

a. 전체 보고기업들이 보고한 세전 당기순이익 \$845,410백만에 대한 비율

패널 D : 음의 일시적 BTD를 보인 항목 순위			
순위	항 목	BTd 합계	비율 ^a
1	감가상각	(23,434)	0.168
2	보고해야 할 거래와 관련된 항목	(10,623)	0.076
3	영업권 상각	(9,496)	0.068
4	연금 및 이익분배	(8,121)	0.058
5	이전에 이미 과세된 해외로부터의 배당	(5,951)	0.043

a. 전체 보고기업들이 보고한 세전 당기순이익 \$845,410백만에 대한 비율

패널 E : 양의 일시적 BTD를 보인 항목 순위			
순위	항 목	BTd 합계	비율 ^a
1	매출원가	33,322	0.239
2	대손상각	30,605	0.220
3	각종 평가손실	28,513	0.205
4	처분이익 대 리스수익	26,384	0.190
5	기타의 상각 및 손상차손	18,888	0.136

a. 전체 보고기업들이 보고한 세전 당기순이익 \$845,410백만에 대한 비율

〈표 6〉 Schedule M-3에 따른 LTD 구성항목 (계속)

패널 F : 음의 영구적 LTD를 보인 항목 순위			
순위	항 목	LTD 합계	비율 ^a
1	스톡옵션 비용	(51,315)	0.369
2	이미 과세된 해외로부터의 배당	(28,915)	0.208
3	각종 평가손실	(25,168)	0.181
4	이자수익	(19,812)	0.142
5	국내제조활동 공제	(19,175)	0.138

a. 전체 보고기업들이 보고한 세전 당기순이익 \$845,410백만에 대한 비율

패널 G : 양의 영구적 LTD를 보인 항목 순위			
순위	항 목	LTD 합계	비율 ^a
1	영업권 상각	56,043	0.403
2	Subpart F 소득 등 이와 유사한 소득	51,042	0.367
3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45,942	0.330
4	과세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배당	27,228	0.196
5	미국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손익	18,738	0.135

a. 전체 보고기업들이 보고한 세전 당기순이익 \$845,410백만에 대한 비율

먼저 패널A에서는 M-3 양식을 보고한 기업 중 차이를 보고한 항목별로 빈도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인데 이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아서 보고기업의 90%가 차이를 보고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접대비인데 이는 회계상 특별한 제약이 없는 반면에 세법상 제약이 따르는 비용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패널B는 총 LTD 중 음의 LTD 크기에 따른 순위를 보여준다. 음의 LTD는 결과적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LTD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스톡옵션인데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에 따른 경영자보상이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아니면서도 세무상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감가상각비도 전체적으로 음의 LTD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무보고목적으로는 정액법과 같이 감가상각비가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서 세무보고목적으로 정률법과 같은 조기상각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C는 반대로 양의 LTD 크기에 따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Subpart F 소득 등인데 이는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 중에서 세무상 과세소득에 산입시키는 것이다.

패널D와 패널E는 총 LTD를 세분화하여 일시적 차이만을 본 것이다. 음의 일시적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감가상각비였으며 양의 일시적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매출원가였다. 패널F와 패널G는 영구적 차이의 크기 순위를 보여주는데 음의 영구적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스톡옵션비용이며 양의 영구적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영업권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5. M-3 양식의 문제점

M-3 양식이 의무화된 지 이미 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일부 납세자들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사실상 납세자 입장에서 보자면 M-3 양식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자면 M-3 양식의 의무화는 납세이행비용을 증가시킨다. 우선 M-3 양식은 납세자에게 미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투명성의 증가는 공격적 세무계획을 추진하던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조세상 위치가 IRS에 게 직접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3 양식은 기업들의 세무계획으로부터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세후 요구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100개에 이르는 자세한 항목별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일 자체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무전문가 협회 이사인 Fred Murray는 M-3 양식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새롭게 또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McCafferty 2004). 이와 유사하게 KPMG의 세무분야 이사인 Erin Collins는 M-3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것이라고 말한다(Collins, 2006).

2011년 4월 25일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회장인 Thompson(2011)은 IRS Commissioner인 Maloy에게 보내는 공식서한에서 M-3 양식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첫째, M-3 양식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후적인 세무조사가 간편해진다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일부 세무조사요원들도 M-3 양식이 실제로 세무조사에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대부분 회계자료는 전산화되어 있는데 M-3 양식은 기업의 회계장부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추출해야 하는 등의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M-3 양식에서 과세소득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Part II, III의 (d)칸은 대부분 이미 신고서식에서 제출했던 금액들과 중복된다. 따라서 M-3 양식 자체가 상당히 중복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일부 자료들은 오히려 과세당국이 직접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쉽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와 같은 자료는 납세자가 제공하기 보다는 과세당국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간편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Thompson(2011)은 현재와 같은 M-3 양식 대신에 기존의 M-1 양식을 다소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M-3 양식을

계속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보고거래, 연구개발비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3 양식이 가져오는 부작용 측면에서 Donohoe and McGill(2011)은 M-3양식 개발과 관련된 사건일에 대한 추가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우선 M-3 양식의 의무화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주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비재량적 영구적 차이가 큰 기업들에게서 부정적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그들의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M-3 양식은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작성비용을 초과하는 효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M-3 양식의 교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IV.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모두 191가지의 신고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와 부속서류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우리나라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내역을 보여주는 신고서식으로서 미국의 M-3 양식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항목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할 항목들(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 차감해야 할 항목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소득처분을 기입하도록 한다. 소득금액조정명세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부속서류로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1)과 (2)로 작성하며 세무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가산항목과 차감항목만을 구분하고 있을 뿐 세부내역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M-3 양식보다는 그 이전 양식인 M-1과 유사하다. 다만 M-1 양식에서는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의 총액만을 기입하는데 비하여 납세자 자율에 맡겨 있기는 하지만 부속서류 등을 통해서 차이 내역을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차이 내역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별로 임의로 각 항목을 기재할 경우에 납세자간 비교가 어려우며 기간별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별 비교도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나라 기업들도 BTD가 조세회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BTD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 개선의 필요성

비록 우리나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BTD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서식을 개선하기에 앞서 과연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앞선 식에서 볼 수 있듯이 BTD에는 일차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반영되는 것이며 만일 이 둘 간의 차이가 없다면 경영자의 조세회피 동기가 BTD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M-3 양식과 같은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법과 회계기준이 상당히 일치되어 BTD가 경영자의 조세회피 동기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동기가 어느 정도 BTD와 관련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BTD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세무 조사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세회피기업을 찾아내고 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¹¹⁾

BTD 분석 자료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IFRS를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채택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도 세법과 회계기준이 지금보다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에 따라 BTD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무보고나 세무보고에서 개별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성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K-IFRS의 영향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K-IFRS를 도입하였다. K-IFRS는 종전의 회계기준과는 기본적인 틀이 다른 새로운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는 현재와 같이 회계기준에 의존한 세법규정에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지금보다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²⁾

11) BTD를 보여주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지금보다 표준화됨으로써 개별 기업의 탈세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하는 용도 외에도 BTD의 전반적인 추세나 차이 항목들을 분석하여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억제하는 세법의 입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부 항목별 표준화 정도가 너무 떨어져서 과세당국 등에 가져다 주는 정보효과가 미약하다.

12) 대표적으로 심태섭 등(20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지금보다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IFRS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기에 자국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서 법인세법의 준용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둘째, IFRS와 세법이 취하는 기본개념에서 차이가 있기에 세법이 회계기준인 IFRS를 계속적으로 준용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이 원칙중심인 IFRS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법률상 불확정개념이 증가하며 이는 과세관청의 재량적 남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넷째, IFRS도입이후 기업회계기준이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간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K-IFRS는 기본 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이를 세법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그 규정이 계속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K-IFRS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점에서 기존의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한 결산확정주의를 현재보다는 완화하는 것이다.¹³⁾ 실제로 K-IFRS가 도입된 이후에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였던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23조), 책임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등에서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고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은 이전에 비하여 좀 더 분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하게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지금보다는 보다 독립적인 기준에서 산출될 것이며 이에 따라 LTD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조세회피 동기나 이익조정 동기가 LTD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개선하여 LTD 분석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작성비용

미국의 M-3 양식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납세자의 작성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개선하여 미국의 M-3 양식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서식을 만들게 되더라도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성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개별납세와 개별재무제표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과 연결납세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M-3 양식의 상당수 항목들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즉, LTD의 출발점이 되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결납세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게 되며 그 때문에 M-3 양식 Part I의 항목들은 대부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재무제표와 개별납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실체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 없다.¹⁴⁾ 이로 인하여 미국의 M-3 양식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한 양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섯째, 이미 제정된 IFRS 규정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제·개정요구에 의해 지속적인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현행 법인세법 체제하에서는 법인세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불확정성을 높일 수 있다.

13) 보다 극단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을 미국에서와 같이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14) 물론 우리나라도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가 된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가 계속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수치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연결납세가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금융지주회사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목적 상 보고실체간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처분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LTD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 즉, 일시적 차이는 유보처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으며 영구적 차이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이나 사외유출 처분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외에 별지 제50호 서식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이나 별지 제55호 서식인 소득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이미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커다란 추가적인 노력 없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M-3 양식처럼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선방향

가. 항목구성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할 항목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조세회피의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신현걸(2002)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선 일시적 차이로는 차감 및 가산조정을 합하여 ①대손충당금, ②당기 및 전기미수수익, ③세법상 준비금 전입 및 환입, ④유가증권평가손익, ⑤퇴직급여충당금, ⑥손익귀속시기차이, ⑦감가상각비 순으로 세무조정의 빈도수가 높았으며 영구적 차이로는 ①접대비, ②지급이자, ③법인세 추납 및 환급, ④이익잉여금, ⑤세금과 공과금 순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아래의 <표 7>과 같이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시해볼 수 있다.

<표 7>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예시

항목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사외유출	유보	사외유출
1. 인건비				
a. 급여 및 상여				
b. 성과에 기초한 보상				
c.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2. 감가상각비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4. 접대비				
5. 기부금				
6. 세금과 공과금				
7. 수입배당금				

〈표 7〉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예시 (계속)

항목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사외유출	유보	사외유출
8. 지분법손익				
9. 이자수익				
a. 수입이자				
b. 현재가치조정				
10. 이자비용				
a. 지급이자				
b. 현재가치조정				
11. 자산·부채 평가손익				
a. 재고자산				
b. 유가증권				
c. 외화자산과 부채				
d. 기타 손상차손				
12. 부당행위계산 부인				
a.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과 매입				
b.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취득과 처분				
c. 인정이자				
d. 기타				
1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14. 잉여금 변동				
a. 법인세추납 및 환급				
b. 전기오류 및 회계변경누적효과				
c. 기타 포괄손익				
15. 기타 조정사항				
16. 총계				

위와 같은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가산과 차감의 구분

우선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과 차감해야 할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간의 조세회피 의도가 반영되는 정도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즉,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시도한

15) 미국의 M-3 양식에서도 Part II에서는 수익, Part III에서는 비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Part II에서도 매출원가 차이를 기록하게 하는 등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면 이는 가산항목보다는 차감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그리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이 별도의 추가적인 작성비용을 유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 칸을 두 개로 구분하여 가산금액과 차감금액을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소득처분에 따른 구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발생하면 차이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미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유보)을 별도 관리하고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처분(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처분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강제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시적 차이는 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계정을 통해서 쉽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LTD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들에서는 일시적 차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여 Frank et al.(2009)에서는 오히려 영구적 차이가 조세회피를 반영하는데 더욱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영구적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기업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Hanlon and Heitzman(2010)은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따라 조세회피가 반영되는 정도가 차이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본다면 비록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중에서 어느 것이 조세회피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가산과 차감항목별로 다시 소득처분에 따라 유보와 사외유출 등으로 칸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다.¹⁶⁾

(3) 인건비(항목1)

인건비는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단순한 급여 외에도 스톡옵션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지급형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처리방법이 상이한 대표적 비용으로서 LTD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퇴직관련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비교적 큰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표시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급여 및 상여, 성과에 기초한 보상,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6) 물론 소득처분에 따라 더욱 상세한 구분도 가능하다.

(4) 감가상각비 등 주요 조정항목들(항목2부터 6)

법인세법과 회계기준 간 가장 빈번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감가상각비와 대손금, 접대비와 기부금 등이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에 회계기준에서는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비용에 대해서는 BTD가 빈번하게 큰 금액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현걸(2002)의 연구를 보면 일시적 차이 중에서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차이가 빈도수가 높았으며 영구적 차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접대비 한도초과였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BTD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M-3 양식 신고현황을 분석한 앞선 <표 6>을 보더라도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 등은 빈도수와 BTD금액에 있어서 모두 상위권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들이 가져오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FRS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큰 BTD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신현걸(2002)에서 빈도수가 높은 항목으로는 세금과 공과금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 제안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감가상각비,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 공과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5) 수입배당금과 지분법 손익(항목7과 8)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세법에 별도로 과세소득에서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대로 지분법 손익은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회계상 손익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과 지분법 손익은 경영자의 조세회피의도와 무관하게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BTD이다. 이러한 항목을 별도 구분 표시함으로써 BTD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 제안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수입배당금과 지분법 손익을 별도 구분 표시하도록 한다.

(6) 이자수익과 비용의 구분(항목9과 10)

Mills and Newberry(2005)는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기업 외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세무상으로는 이자비용으로 공제받는 이중목적에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에 활용되는 절세수단거래로 위탁우선주(TRUST), 합성리스(Synthetic Lease)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외부채 이용 동기가 큰 기업들일수록 재무보고목적상 이자비용과 세무보고목적의 이자비용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Mills and Newberry(2005)의 연구는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의 이자비용 간 차이가 조세회피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미국의 M-3 양식에서도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

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선 <표 6>의 패널A를 보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2007년 M-3 양식 보고한 기업들에서 빈도수 기준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처럼 이중목적 거래를 수행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파트너십이 도입되면서 미국과 같은 절세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현재가치를 반영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⁷⁾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새로 제안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평가손익(항목11)

새로운 K-IFRS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목적상 차이에서 비롯된다. 재무보고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세법은 납세자의 현재 조세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은 기업의 미래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법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손익은 LTD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새로 제안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평가손익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손익을 세분화하여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과 부채, 손상차손 등으로 구분하였다.

(8) 부당행위계산부인(항목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언제나 조세회피의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조세회피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그리고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것 등이다. 이를 반영하여 <표 7>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항목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였다.

(9) 잉여금 변동(항목14)

신현걸(2002)에서는 법인세 추납 및 환급,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이 발생빈도가 높은 세

17)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에 대해 유효이자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무조정 항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당기순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직접 변동시킨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같은 기타포괄손익 등도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로서 중요한 세무조정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표 7>에서는 잉여금 변동 항목들을 별도로 구분 표시한다.

나. 작성 사례

<표 8> A기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사례

항목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사외유출 및 기타	유보	사외유출 및 기타
1. 인건비				
a. 급여	43,713			
b. 성과에 기초한 보상		60,905		
c.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2,652,597		(2,381,293)	(934,736)
2. 감가상각비	4,048		(6,851)	(4,047)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526,608		(2,535,079)	
4. 접대비		298,775		
5. 기부금				
6. 세금과 공과				
7. 수입배당금				
8. 지분법손익	482,066	56,295		
9. 이자수익				
a. 수입이자	15,976		(24,587)	
b. 현재가치조정				
10. 이자비용				
a. 지급이자				
b. 현재가치조정				
11. 자산·부채 평가손익				
a. 재고자산				
b. 유가증권				
c. 외화자산과 부채	246,585		(411,266)	
d. 기타 손상차손				

〈표 8〉 A기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사례 (계속)

항목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사외유출 및 기타	유보	사외유출 및 기타
12. 부당행위계산부인				
a.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과 매입				
b.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취득과 처분				
c. 인정이자				
d. 기타				
1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14. 잉여금 변동				
a. 법인세추납 및 환급				
b. 전기오류 및 회계변경누적효과				
c. 기타포괄손익				
15. 기타 조정사항		7,743	(637,771)	(259,375)
16. 총계	5,971,597	423,359	(5,996,849)	(1,198,158)

위의 <표 8>은 2011년 K-IFRS를 적용한 상장기업인 “A”사의 세무조정신고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표 7>에서 제안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한 사례이다.¹⁸⁾

“A”사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성과에 기초한 주식기준보상이 있으며 매해 발생되고 있으며 퇴직관련비용으로 보험수리적 손익 금액은 대손금 다음으로 “A”사에 가장 크게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가상각비, 대손금 및 접대비 항목을 보면 대손금은 “A”사에 가장 큰 금액으로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 및 접대비 또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다. 수입배당금과 지분법손익에서는 “A”사가 인식한 수입배당금은 없으나 지분을 25%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부터의 지분법손익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조정이 되고 있다.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서 “A”사는 금융상품에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외부 자회사는 없으나 금융비용으로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평가손익항목으로 당사의 경우는 화폐성 외화자산과부채의 환산으로부터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18) A사는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말 총자산과 매출액은 모두 2,000억원 정도이며 당기순이익은 26억원이다.

4. 추가적인 고려사항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개선에 대한 몇 가지의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표준화된 형태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M-3 양식의 경우에도 이러한 작성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IFRS가 적용되는 기업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작성비용과 적용받는 회계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상장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소득처분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 제안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모든 소득처분사항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여기에서 제안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별도의 신고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개선과 동시에 관련된 신고서식의 개선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개편하여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한다면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에 따른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신고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새로운 신고서식인 M-3 양식 개발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신고서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IFRS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채택되면서 LTD에 대한 분석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된다. 즉 전통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높은 일치도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LTD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LTD를 보여주는 세무보고 신고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안의 핵심은 **BTD**의 세부내역을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일정한 틀로 표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BTD**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세회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구성항목을 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BTD**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개선안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실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 논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졌던 **BTD**에 대해 과세당국이나 실무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운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종권. 2000.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회계학연구』 (제25권 제2호) : 51-77.
- 고종권. 2003.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 75-104.
- 구자은. 2011.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준화. 1997. 국가간 세부담 차이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 이전가격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 221-251.
- 신현걸. 2002.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현황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 169-193.
- 심충진 · 김문현 · 이종운.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27.
- 심태섭 · 최기호 · 김경미. 2011. 『세법 · 회계간 관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 이동현. 2009. 『조세부담이 연결실체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5권 제3호) : 147-182.
- 이상신.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 · 적용의 법적 쟁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 171-193.
- 이영한. 2006.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해외관계사의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 285-371.
- 정운오 · 고종권 · 김갑순 · 노희천. 2006.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 203-238.
- 최기호. 2004.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관계.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 103-131
- Atwood, T. J., Drake, M. S and Myers, L. A., 2010, Book-tax Conformity, earnings persistenc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and future cash flow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11-125.
- Bankman, J., 1999, The New Market in Corporate Tax Shelters, *Tax Notes* 83 : 1775-1794.
- Bankman, J., 2003, The Tax Shelter Battle. In : Aaron, H., Slemrod, J. (Eds.), *Crises and Tax administration*.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Graham and Tucker, 1996에서 재인용)
- Boynton, C. and L. Mills, 2004, The Evolving Schedule M-3 : A New Era of Corporate Show and Tell? *National Tax Journal* (Vol. 57, No.3) : 757-772.
- Boynton, C., P. DeFilippes and E. Legel, 2006, A First Look at 2004 Schedule M-3 Corporate Reporting, *Tax Notes* (September 11) : 943-981.
- Boynton, C., P. DeFilippes and E. Legel, 2008, A First Look at 2005 Schedule M-3 Corporate Reporting, *Tax Notes* (November 3) : 563-595.

- Boynton, C., P. DeFilippes, E. Legel and T. Reuin, 2011, A First Look at 2007 Schedule M-3 By Large Corporations, *Tax Notes* (August 15) : 689-725.
- Canellos, P. and E. Kleinbard. 2002, Disclosing Book-tax Differences. *Tax Notes* (August 12) : 999.
- Chan, K., K. Lin and P. Mo, 2010, Will a Departure From Tax-Based Accounting Encourage Tax Noncompliance? Archival Evidence from a Transition Econom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58-73.
- Collins, J., D. Kemsley and D. Shackelford, 1997, Transfer Pricing and the Persistent Zero Taxable Income of Foreign-Controlled U.S. Corporation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9, Supplement) : 68-83.
- Collins, J., Kemsley, D., and Lang, M., 1998. Cross-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and earnings valu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6 No. 2) : 209-229.
- Collins, E. 2006. *Schedule M-3 Reporting Requirements*.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Midyear Meeting, February 24.(Donohoe & McGill(2011)에서 재인용).
- Desai, M., 2005. The Degradation of Reported Corporate Prof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4) : 171-192.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 Donohoe, M. and G. McGill, 2011, The Effects of Increased Book-Tax Difference Tax Return Disclosures on Firm 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33, No. 2) : 35-65.
- Everett, J., C. Hennig, and W. Raabe. 2007. The Schedule M-3 compliance maze : Unanswered questions. *Tax Notes* (March 19) : 1103-1128.
- Frank, M. M., L. J. Lynch and S. O. Reg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84, No.2) : 467-496.
- Graham, J. and A.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1) : 563-594.
- Gramlich, J., P. Limpaphayom and S. Rhee, 2004, Taxes, keiretsu affiliation, and income shif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7, No.2) : 203-228
-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27-178.
- Hanlon, M. and T. Shevlin, 2005. Book-tax conformity for corporate income : an introduction to the issues. *Tax Policy and the Economy* (19) : 101-134.
- Jacob, J., 1996, Taxes and Transfer Pricing : Income Shifting and the Volume of Intrafirm Transf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4, Autumn) : 301-312.
- Lisowsky, P., 2010, Seeking Shelter : Empirically Modeling Tax Shelter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85, No.5) : 1693-1720.

- McCafferty, J. 2004. Matched Sets : A Proposal to Synchronize Accounting and Tax Reporting. *CFO Magazine*(April 8).
- Mills, L., 1998, Book-Tax Difference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6, No.2) : 343-356.
- Mills, L. and G. Plesko, 2003, Bridging the Gap : A Proposal for More Informative Reconciling of Book and Tax Income. *National Tax Journal* (Vol. 56, No. 4) : 865-893.
- Mills, L., and Newberry, K., 2005. Evidence of off-balance-sheet financing from book-tax differen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3, 251-282.
- Newton, D., 2006. IFRS : Tax implications for the EU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are you ready?. *PriceWaterHouseCoopers*.
- Outslay, E. and G. McGill, 2002, Did Enron Pay Taxes?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to Decipher Tax Status, *Tax Notes*(August 19) : 1125-1136.
- Scholes, M., M. Wolfson, M. Erickson, E. Maydew and T. Shevlin, 2009,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Hall.
- Wilson, R., 2009,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Vol.84, No.3) : 969-999.
- Thompson, P.A., 2011, Comments on Schedule M-3 with the Objective of Reducing Burden and Duplication, *April 11, 2011 A Letter to IRS Commissioner*, www.aicpa.org.
- Young, D and Guenther, D. A, 2003,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1 No. 3) : 553-579.

Lessons from Schedule M-3 of U.S. and Their Implications for Disclosure on Book - Tax Differences in Tax Return of Korea

Kiho Choi* · Jeongmi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reformation of Schedule 15, Reconciling of Book and Tax Income(“Schedule 15”), implemented the standardization in the reporting of book—tax differences (“BTD”).

In the related literature, book—tax differences were viewed as indicators of tax avoidance. In other words, the companies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have bigger BTD relative to the companies not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Because of the case of Enron structuring transactions that reduced the amount of taxes paid without reporting any corresponding decrease in pretax book incomes, Internal Revenue Service(IRS) and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developed new schedule M-3 with a view towards increasing transparency and standardization in the reporting of BTD for tax years ended December 31, 2004.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schedule M-3, it enables BTD to be analyzed and is comprised of about 100 items of sufficient detail of BTD.

BTD is not important to be considered in Korea because there is an insignificant magnitude of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 income under current Korea tax system. In contrast to the US tax system that accounting concepts under both tax and financial reporting are different, the Korea tax system has little difference between book and tax income. Additionally, even if the book—tax differences exist, these differences can be adjusted by doing the year—end adjusting journal entries under Korea tax system. Nevertheless, existing research provides that tax avoidance and BTD have a positive relation to the companies in Korea. Moreover, as the adoption of IFRS, it is inevitable to have the differences in between book income and tax incom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chedule 15 containing standardization in the reporting of book and tax differences and enabling BTD to be analyzed systematical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of Schedule 15, Reconciling of Book and Tax Income. Schedule 15 shows the items of BTD in Korea tax system and plays a similar role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cgh@uos.ac.kr, 02-6490-5037, Primary Author

**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jeongmilee@msn.com, Corresponding Author

of Schedule M-3. The matter in the improvement of Schedule 15 is that the items of BTD shown the companies' transactions should be standardized by listing more uniform detailed categories of reconcilia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new Schedule 15 containing 14 detailed items of BTD that have large difference between tax and accounting standard and are likely to be reflective of tax avoidance through the sample of the company in real.

This paper has limited to propose new Schedule 15 as one of the tools of BTD's analysis by standardizing BTD that could possibly appear regarding tax avoidance under current tax and financial reporting system. However, this paper implicates that the study of BTD regarding tax avoidance and its usefulness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ractitioners and government bodies including NTS to increase its utilization.

<Key words> Schedule 15, Book-Tax Differences, Tax Avoidance